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6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6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 폐지이유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결 {대법원 법정 3201 - 107('96. 4. 15), 수원지방법원 법정 3201 - 194('96. 4. 25)} 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없음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출년월일 : 2002. 11.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폐지이유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법정 3201-107('96.4.15). 수원지방법원 법정 3201-194('96.4.25))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칙 부

-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1991. 6. 24 조례 제1144호전문개정]
개정 1995. 8. 31 조례 제1373호
1996. 7. 18 조례 제14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부과등) ①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기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 자료부와 규칙 제51호서식의 과태료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제7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칙)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징수위임)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991. 6. 24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31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18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